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8월 0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AG : BV361 종류 CG : BV362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1. 종류 A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2. 종류 C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1. 종류 AG 수익증권 12. 종류 CG 수익증권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 A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3.7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0 [종류 C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5.2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0
제40조 (판매 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3. 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
제41조(환매수수료)	제2항 1. 종류 A 및 종류 A-E 수익증권 가. 30일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10% 2. 종류 C1/C2/C3/C4, 종류 C-F, 종류 C-E, 종류 W 및 종류 S 수익증권 가. 9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	제2항 1. 종류 A, 종류 A-E 및 종류 AG 수익증권 가. 30일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10% 2. 종류 C1/C2/C3/C4, 종류 C-F, 종류 C-E, 종류 W, 종류 S 및 종류 CG 수익증권 가. 9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W, 및 S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W, S,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책임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책임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AG BV361
CG BV362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AG BV361
CG BV362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8월 09일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G, CG 신설>

<br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G, CG 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d>환매 수수료</td><td>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10%</td><td>9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90%</td><td>0.90%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37%</td><td>0.52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5%</td><td>0.05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2%</td><td>0.02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1.34%</td><td>1.49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1.34%</td><td>1.49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AG</td><td>187</td><td>481</td><td>805</td><td>1,768</td></tr>
<tr><td>종류CG</td><td>153</td><td>481</td><td>844</td><td>1,921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/td>
</tr>
</table>

		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8월 0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AG : BV359 종류 CG : BV360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4. 종류 A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5. 종류 C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4. 종류 AG 수익증권 5. 종류 CG 수익증권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 A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.0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8 [종류 C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5.0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8
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2. 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<추가>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다른 종류형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책임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책임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359 CG BV360

<table>
<tr><td>한 사항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AG BV359
CG BV360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8월 09일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G, CG 신설>
</td>
<td>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G, CG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G, CG 신설>
</td>
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종류형</th><th rowspan="2">지급시기</th></tr>
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선취판매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50%이내</td><td>없음</td><td>매입시</td></tr>
<tr><td>후취판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해당사항 없음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- 30 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
-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3000%</td><td>0.3000%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1000%</td><td>0.5000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300%</td><td>0.0300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180%</td><td>0.0180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4480%</td><td>0.8480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0.4480%</td><td>0.8480%</td></tr>
<tr><td>합성총보수및비용</td><td>1.0680%</td><td>1.4680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AG</td><td>159</td><td>393</td><td>652</td><td>1,420</td></tr>
<tr><td>종류CG</td><td>150</td><td>474</td><td>831</td><td>1,892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</td>
</tr>
</table>

		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8월 0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AG : BV363 종류 CG : BV364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7. 종류 A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8. 종류 C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7. 종류 AG 수익증권 18. 종류 CG 수익증권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 A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4.7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5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 [종류 C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5.2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5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
제40조 (판매 수수료)	제2항 <추가> 제3항 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,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	제2항 3. 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 제3항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,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, C3, C4, C5, C-E, C-F, I, W, S, C-P, C-P2, C-PE, C-P2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, C3, C4, C5, C-E, C-F, I, W, S, C-P, C-P2, C-PE, C-P2E,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투자정보		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363 CG BV364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363 CG BV364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8월 09일 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종류 AG, CG 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2부 집합투자기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(2) 종류별 가입자격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(2) 종류별 가입자격

<table>
<tr>
<td>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G, CG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G, CG 신설>
</td>
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종류형</th><th rowspan="2">지급시기</th></tr>
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선취판매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5%이내</td><td>없음</td><td>매입시</td></tr>
<tr><td>후취판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해당사항 없음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환매수수료 없음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90%</td><td>0.90%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47%</td><td>0.52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5%</td><td>0.05%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2%</td><td>0.02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1.44%</td><td>1.49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1.44%</td><td>1.49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AG</td><td>221</td><td>643</td><td>1,108</td><td>2,491</td></tr>
<tr><td>CG</td><td>212</td><td>668</td><td>1,171</td><td>2,666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인프라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
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8월 0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종류 AG, CG 신설>	종류 AG : BV365 종류 CG : BV366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종류 AG, CG 신설>	제3항 10. 종류A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1. 종류C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종류 AG, CG 신설>	제1항 10. 종류 AG 수익증권 11. 종류 CG 수익증권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종류 AG, CG 신설>	제3항 [종류A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4.0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2.7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0 [종류C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4.0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3.7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0
제40조 (판매 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3.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25% 이내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365 CG BV366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365 CG BV366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8월 09일 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G, CG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종류형</th><th rowspan="2">지급시기</th></tr>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<tr><td>선취판매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25% 이내</td><td>없음</td><td>매입시</td></tr><tr><td>후취판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없음</td><td>환매시</td></tr>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없음</td><td>환매시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<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
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40</td><td>0.40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27</td><td>0.37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5</td><td>0.05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2</td><td>0.02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74</td><td>0.84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0.74</td><td>0.84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<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AG</td><td>76</td><td>239</td><td>419</td><td>954</td></tr>
<tr><td>종류CG</td><td>86</td><td>271</td><td>476</td><td>1,083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</td>
</tr>
</table>

		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